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11
----------	--------

제출년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최찬규, 박태순, 김제국,
한명훈, 설호영, 박은경,
김유숙, 현옥순, 최진호,
선현우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안산시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함.
- ‘추모의 날’ 지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추모사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함(안 제5조 신설)
-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4. 현행조례 : 붙임 2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부서검토의견 : 붙임 5

【붙임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업무 담당 국장

3.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 활동가

5. 그 밖에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생 략)</p> <p>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 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p> <p>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 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 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6조(현행 제5조와 같음)</p> <p>제7조(재정지원) ① ---- 제6조-----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선감 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업무 담당 국장

3.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4.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 활동
가

5. 그 밖에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

-----.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 - 1011
----------	----------

제안년월일 : 2026. 3. 27.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지 타당성의 정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일몰제)을 명문화하고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골자

-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
- 위원회 위원 중 안산시의회 의원 추천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산시의회 의원”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8조(위원회 설치)</p> <p>① (생략)</p> <p>② <신 설></p>	<p>제8조(위원회 설치)</p> <p>①(개정안 본문과 같음)</p> <p>② <u>위원회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신 설></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u>1. 안산시의회 의원</u></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u>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